

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6. 7.

과)

제 출 자 : 하남시장(주택

1. 제안이유

- 최근 공동주택의 빈번한 화재 등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불편이 증대하고 있으며,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('22. 8. 18.)에 따른 경비·청소노동자 등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필요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범위를 완화하고자 함
- 또한, 경비·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및 재해·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의 긴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경비실 및 미화원 시설지원 범위 확대(안 제3조제1항제13호 개정)

- 1) 「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」 제4조를 반영하여 경비실 및 미화원 대기실 냉·난방기 설치 항목을 경비·청소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

나.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(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)

- 1) 재해·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(옥상 자동개폐시설 등)의 설치 또는 유지·보수에 관한 비용(제3조제1항제4호)
- 2) 경비·청소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비용(제3조제1항제13호)
- 3)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(제3조제1항제14호)

다.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(안 제3조제3항 개정)

- 1) 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액 지원 제한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른 지원을 가능토록 단서 조항 추가
- 라.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(안 제3조제5항 개정)
- 1) 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에 제1항제13호 추가
- 마. 하남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절차 생략(안 제5조제2항 개정)
- 1)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하남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, 제3조제1항제4호와 제13호는 심의를 생략 가능토록 단서조항 추가
- 바.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으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정보 간소화(별지 제2호서식 개정)
- 1)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의 신청인의 주소 이외의 정보는 선택 기재 사항으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경비·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, 재해 예방 시설물 설치, 주차장 개방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특정 사업(근무환경 개선, 재해 예방)은 5년 내 재지원 제한이나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,
- 아울러 권익위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인 주소 외의 정보는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